제953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한시 상향(강화) ○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 – 은행 0.03%→0.035%, 비은행 0.03%→0.045%로 '25.12월말까지 한시 인상 ▶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	1.비중요
2	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신기술 적용제품 · 시설 확인의 기준(신설) ○ 해양수산 신기술 기업의 영업지원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'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 · 시설 확인' 관련 조항 신설 – 신기술 적용 제품, 시설의 확인 기준 설정 – 신기술 적용 제품, 시설의 확인 절차(신청–심사 및 평가–이의신청–확인서 발급) 마련 ▶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의2	1.비중요
3	어선법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(신설) ○ 어선건조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필요한 인력 · 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하게 함 ▶어선법 제1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(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)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비행기록장치 대체장비 기준(신설) ○ 헬리콥터에 비행기록장치 대신 대체장비를 장착할 시 대체장비가 만족해야하는 성능요건, 장착기준, 운용관리 절차를 신설 ▶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(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) 제2장 4.3A,제3장 4.7A제4장 4.7A	1.비중요
5	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보안인증 등급 신설(신설) ○ 사업자가 보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상 · 중 등급 기준을 신설(별표 1~4) –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안인증 획득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관리적, 물리적, 기술적 보호조치에 상중 등급별 적용기준 규정(별표 1 ~ 3) – 국가기관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의 추가 보호조치 사항에 상중 등급별 적용기준 규정(별표 4) * 민간 클라우드를 국가기관등·공공기관의 업무시스템에 제공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중등급은 현행 평가항목을 일부 수정·보완(3개 항목)하고, 상등급은 평가항목 일부 신설(4개 항목) ▶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전체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지정기간 연장 및 신규품목 지정(강화) ㅇ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산물 등을 수입 · 양도한 자에게 해당물품의 국내유통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–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4개 품목(HSK단위) 추가 * 생강(신선 냉장), 대파(신선 냉장), 산양삼, 천연꿀 –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26개 품목 지정 기간 연장 * 양파(신선 냉장), 도라지, 냉동마늘, 냉동고추, 팥, 건고추, 콩(대두), 땅콩, 참깨분, 황기: 식품용, 당귀: 식품용, 지황: 식품용, 작약: 식품용, 김치, 마늘(신선 냉장), 표고버섯, 대추, 생강 ▶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	1.비중요
7	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교육기관 지정취소 등(신설) ㅇ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·업무정지 (개정안 제20조 제4항 신설) – 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(6개월 이내)할 수 있는 요건 규정 * 1호)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음, 2호) 업무정지 처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 계속, 3호)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, 4호) 기타 인권교육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(1호와 2호는 필요적 취소 사유) ㅇ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취소·업무정지 (개정안 제20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의2 제3항 신설) –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(6개월 이내)할 수 있는 요건 규정 * 1호)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음, 2호)업무정지 처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 계속, 3호)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, 4호) 기타 보수교육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(1호와 2호는 필요적 취소 사유) ▶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	
8	위생용품의 회수 · 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위생용품 위해성 등급(신설) ○ 위생용품 회수 명령을 위한 위해성 등급(1·2·3등급) 분류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 기준·규격 위반여부, 검출된 발암물질·중금속 종류 및 위해 정도 등에 따라 구체화(안 제4조) ▶위생용품의 회수 · 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2.위생용품 회수 계획 보고 등(신설) ○ 회수명령을 받은 회수 영업자의 회수계획 및 종료보고, 폐기 등 사후조치 관련 세부절차 규정 – 회수 계획 보고 및 모니터링 의무 등 – 회수 종료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의무 등 – 폐기 등 계획보고서 및 사후조치 완료보고서 제출 등 ▶위생용품의 회수 · 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7조,제6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국가유산청)	1.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영업 금지 제한 대상(신설) ㅇ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 및 제한 ▶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2.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제안서 제출 요건(신설) ㅇ 지역주민 등 누구든지 해당 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에 대한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▶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3.예비문화유산 선정기준 및 절차(신설) ㅇ 예비문화유산 선정기준으로 ① 역사, 문화, 예술, 사회, 산업,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, ②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가 기대되는 것, ③ 다수 국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,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형의 것으로 규정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ㅇ 예비문화유산 신청 및 선정 절차는 ①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서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② 국가유산청장은 2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③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④ 그 밖에 선정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▶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,제32조	
10	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국가유산청)	1.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 및 변경신고 제출서류(신설) ㅇ 예비문화유산 선정 신청 시 신청서 서식과 신청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 등 제출 서류를 규정함 ㅇ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증서를 발급하고,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, 주소, 보관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▶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,제26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1	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(환경부)	1.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관련 절차(신설) ㅇ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위한 절차로서 ①신청서 제출 절차 ②신청서 검토 절차 ③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구체적으로 규정 ▶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6조	1.비중요
12	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웹소설 등 판매촉진비용 전가 금지(신설) ㅇ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-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▶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	1.중요